

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

-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도 포함-



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“대·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·지원등에 관한 기준”을 개정했다.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,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.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했다. [편집자주]

대·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·지원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

- 개정 및 시행일 : 2015. 1. 1.
- 건설업 관련 주요 내용
 -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에 포함
 -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및 활성화 위해 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의 대상 범위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포함하여 시행

제6조 (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)

③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(해외건설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경우 해외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포함)

○ 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상향 조정(제13조제7항 관련 [별표1] 협약 평가별 점수배분 기준)

-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 확대 : 8점 → 12점
- 현금(성)결제율 제고 : 17점 → 19점
- 대금지급기일 단축 : 9점 → 12점

※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대기업 인센티브

평가등급	평가점수	제 공 내 용
최우수	95점 이상	- 직권조사 2년간 면제(조사면제라 함은 당해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, 이하 동일) -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,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(1년, 1회) -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- 법인·개인 표창 수여(위원장 이상)
우수	90점 이상	- 직권조사 1년간 면제 -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,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(1년, 1회) -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- 법인 표창 수여(위원장)
양호	85점 이상	-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,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(1년, 1회) - 법인 표창 수여(위원장)

* 공정거래협약
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,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,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·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제도